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정원·조정산업 진흥 및 소방청과의 신속한 산림재난 상황 공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소방경 3명)을 증원하고,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에 현장서비스 강화 및 산림헬기 운항품질보증제도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3명(6급 6명, 7급 11명, 8급 6명, 9급 10명)을 증원하고, 산불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1명, 7급 4명, 8급 6명, 9급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과 국립산림과학원에 미세먼지 및 산림재해 대응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사 3명), 국립수목원에 북한 산림생태계 복원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휴양림 시설의 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림항공본부 및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8급 1명, 9급 2명)을 행정·기술직군의 유사직렬 정원 3명(방송통신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명)으로 각각 전환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한시정원)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4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림청에 둔다.

별표 3 총계 “294”를 “302”로 하고, 일반직 계 “292”를 “297”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0”을 “21”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61”을 “6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38”을 “40”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온라인홍보 담당) 1 다음에 “소방공무원 계 3”을 신설하며, 소방공무원 계 3 다음에 “소방경 3”을 신설한다.

별표 3의2 총계 “310”을 “318”로 하고, 일반직 계 “308”을 “313”으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9”를 “20”으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61”을 “6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44”를 “46”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온라인홍보 담당) 1 다음에 “소방공무원 계 3”을 신설하며, 소방공무원 계 3 다음에 “소방경 3”을 신설한다.

별표 6 총계 “207”을 “227”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206”을 각각 “226”으로 하며, 임업주사 “5”를 “6”으로 하고, 항공주사 “13”을 “14”로 하며, 항공주사보 “14”를 “16”으로 하고, 임업주사보 “23”을 “27”로 하며, 임업서기 “26”을 “32”로 하고, 임업서기보 “15”를 “20”으로 하며, 방송통신서기보 “8”을 “9”로 하고, 운전서기보 “18”을 “19”로 하며, 통신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6의2 총계 “207”을 “227”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206”을 각각 “226”으로 하며, 임업주사 “5”를 “6”으로 하고, 항공주사 “13”을 “14”로 하며, 항공주사보 “14”를 “16”으로 하고, 임업주사보 “23”을 “27”로 하며, 임업서기 “26”을 “32”로 하고, 임업서기보 “15”를 “20”으로 하며, 방송통신서기보 “8”을 “9”로 하고, 운전서기보 “18”을 “19”로 하며, 통신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7 총계 “702”를 “715”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687”을 각각 “700”으로 하며, 임업주사 “121”을 “125”로 하고, 임업주사보 “82”를 “87”로 하며, 방송통신서기 “3”을 “4”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15”를 “120”으로 하며, 통신운영서기 “4”를 “3”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0”을 “9”로 한다.

별표 7의2 총계 “712”를 “725”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697”을 각각 “710”으로 하며, 임업주사 “121”을 “125”로 하고, 임업주사보 “82”를 “87”로 하며, 방송통신서기 “3”을 “4”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15”를 “120”으로 하며, 통신

운영서기 “4”를 “3”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0”을 “9”로 한다.

별표 8 총계 및 일반직 계 “250”을 각각 “253”으로 하고, 4급 이하 “245”를 “248”로 한다.

별표 8의2 총계 및 일반직 계 “66”을 각각 “67”로 하고, 4급 이하 “65”를 “66”으로 한다.

별표 9 총계 및 일반직 계 “97”을 각각 “99”로 하고, 5급 이하 “96”을 “98”로 한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9의2]

산립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제23조의2 관련)

업무	정원	평가기간
산불 진화(산립항공본부)	15명 (6급 1명, 7급 5명, 8급 6명, 9급 3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16명 (6급 1명, 7급 4명, 8급 6명, 9급 5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

산림청 공무원 한시정원표

(제27조 관련)

1. 제27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4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임업연구사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7조(한시정원) 국립지덕권산림 치유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 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4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림청에 둔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94</u>	<u>302</u>	+8
·	·	·	
·	·	·	
일반직 계	<u>292</u>	<u>297</u>	+5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u>20</u>	<u>21</u>	+1
·	·	·	
·	·	·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u>61</u>	<u>63</u>	+2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38</u>	<u>40</u>	+2
·	·	·	
·	·	·	
전문경력관 나군(온라인홍 보 담당)	1		

소방공무원 계	<신 설>	<u>3</u>	+3
소방경	<신 설>	<u>3</u>	+3

[별표 3의2]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소방경	<신 설>	3	+3
-----	-------	---	----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10	318	+8
·	·	·	
·	·	·	
일반직 계	308	313	+5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9	20	+1
·	·	·	
·	·	·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61	63	+2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44	46	+2
·	·	·	
·	·	·	
전문경력관 나군(온라인홍 보 담당)	1		
소방공무원 계	<신 설>	3	+3

[별표 6]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07</u>	<u>227</u>	+20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은 제외한다)	<u>206</u>	<u>226</u>	+20
일반직 계	<u>206</u>	<u>226</u>	+20
·	·	·	
·	·	·	
임업주사	<u>5</u>	<u>6</u>	+1
항공주사	<u>13</u>	<u>14</u>	+1
·	·	·	
·	·	·	
항공주사보	<u>14</u>	<u>16</u>	+2
임업주사보	<u>23</u>	<u>27</u>	+4
·	·	·	
·	·	·	
임업서기	<u>26</u>	<u>32</u>	+6
·	·	·	
·	·	·	
임업서기보	<u>15</u>	<u>20</u>	+5
방송통신서기보	<u>8</u>	<u>9</u>	+1

·	·	·	
운전서기보	<u>18</u>	<u>19</u>	+1
·	·	·	
·	·	·	
통신운영서기보	<u>5</u>	<u>4</u>	-1
·	·	·	
·	·	·	

[별표 6의2]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07</u>	<u>227</u>	+20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은 제외한다)	<u>206</u>	<u>226</u>	+20
일반직 계	<u>206</u>	<u>226</u>	+20
·	·	·	
·	·	·	
임업주사	<u>5</u>	<u>6</u>	+1
항공주사	<u>13</u>	<u>14</u>	+1
·	·	·	
·	·	·	
항공주사보	<u>14</u>	<u>16</u>	+2
임업주사보	<u>23</u>	<u>27</u>	+4
·	·	·	
·	·	·	
임업서기	<u>26</u>	<u>32</u>	+6
·	·	·	
·	·	·	
임업서기보	<u>15</u>	<u>20</u>	+5
방송통신서기보	<u>8</u>	<u>9</u>	+1

·	·	·	
운전서기보	<u>18</u>	<u>19</u>	+1
·	·	·	
·	·	·	
통신운영서기보	<u>5</u>	<u>4</u>	-1
·	·	·	
·	·	·	

[별표 7]

지방산립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02</u>	<u>715</u>	+13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687</u>	<u>700</u>	+13
일반직 계	<u>687</u>	<u>700</u>	+13
·	·	·	
·	·	·	
임업주사	<u>121</u>	<u>125</u>	+4
·	·	·	
임업주사보	<u>82</u>	<u>87</u>	+5
·	·	·	
·	·	·	
방송통신서기	<u>3</u>	<u>4</u>	+1
·	·	·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u>115</u>	<u>120</u>	+5
·	·	·	
·	·	·	
통신운영서기	<u>4</u>	<u>3</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0</u>	<u>9</u>	-1
·	·	·	
·	·	·	

[별표 7의2]

지방산립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12</u>	<u>725</u>	+13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697</u>	<u>710</u>	+13
일반직 계	<u>697</u>	<u>710</u>	+13
·	·	·	
·	·	·	
임업주사	<u>121</u>	<u>125</u>	+4
·	·	·	
임업주사보	<u>82</u>	<u>87</u>	+5
·	·	·	
·	·	·	
방송통신서기	<u>3</u>	<u>4</u>	+1
·	·	·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u>115</u>	<u>120</u>	+5
·	·	·	
·	·	·	
통신운영서기	<u>4</u>	<u>3</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0</u>	<u>9</u>	-1
·	·	·	
·	·	·	

[별표 8]

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6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50</u>	<u>253</u>	+3
일반직 계	<u>250</u>	<u>253</u>	+3
·	·	·	
4급 이하	<u>245</u>	<u>248</u>	+3

[별표 8의2]

국립수목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7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6</u>	<u>67</u>	+1
일반직 계	<u>66</u>	<u>67</u>	+1
·	·	·	
4급 이하	<u>65</u>	<u>66</u>	+1

[별표 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8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7</u>	<u>99</u>	+2
일반직 계	<u>97</u>	<u>99</u>	+2
·	·	·	
5급 이하	<u>96</u>	<u>98</u>	+2